

성과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

2012. 10.

감 사 원

I. 성과감사 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2년 19조 원에서 2011년 46.2조 원으로 2.4배 증가하였고 그중 약제비는 4.8조 원에서 13.4조 원으로 2.8배나 증가하여 총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약제비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Negative List)을 유지하다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비용효과적인 약제¹⁾만 선별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를 지급하는 방식(Positive List)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의약품 과다 사용과 고가 의약품 위주의 처방 선호,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의 고착화 등으로 약제비 증가세는 둔화되지 않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 또한 그만큼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약제 가격·사용·유통관리 정책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2년 4월에도 정부는 보험 약제의 가격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특허가 만료된 신약 등의 상한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²⁾을 새로이 마련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다.

1) 투약비용에 비하여 임상효과가 큰 약제

2) 특허 만료 신약은 특허 만료 전 가격의 80%에서 53.55%로, 복제약은 특허 만료 전 신약 약가의 (최고) 68%에서 특허 만료 전 신약 약가의 53.55%로 인하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유지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계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제 관리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초점

이번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보험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품 허가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리베이트 제공 업체를 적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약제의 가격·사용관리 및 리베이트 단속 등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약제 가격관리 분야에서는 개별 약제의 약가 결정·조정뿐만 아니라 전체 약가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지 등 약가관리의 적정성에, 약제 사용관리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제 오·남용 방지대책 등의 수립·시행의 적정성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분야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각각 감사초점을 두었다. 분야별 감사초점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감사초점

분 야	감 사 초 점
▪ 약제 가격관리	▪ 각종 약가관리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 보험약제 급여기준 설정과 약가의 결정 및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약제 사용관리	▪ 약제 사용관리를 통한 약제비 절감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 ▪ 약제 사용의 안전관리 장치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제제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

3. 감사방법

이번 감사에서는 개별 의약품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약제의 가격을 결정·조정하기 위해 복잡하고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는 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구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리베이트 적발자료와 연간 12억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약제비 청구자료 등으로 인한 감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리베이트 단속 기관별 적발 실적,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고시·목록, 약가협상 목록 등 각종 기초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등 각종 연구보고서를 수집,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약사 등 여러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는 등 감사를 면밀히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준비를 통해 리베이트 단속기관의 리베이트 적발자료를 분석하여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등 각종 조치 누락 사례를 추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 약제의 가격·사용·유통관리에 이르는 각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감사과정

2012. 1. 10.부터 같은 해 1. 19.까지 8일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같은 해 2. 6.부터 4. 6.까지 총 37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질문·답변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2. 10. 11.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실 태

1.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가 수준이 높고 영세 규모 제약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약가 거품이 존재³⁾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유통정보관리 체계 구축, 보험약제비 상환제도 개편 등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한 분야별·주체별 역할과 기능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분 야	주 체	역할 및 기능
유통정보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 가공 ·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리베이트 단속에 필요한 유통정보 제공
실거래가 관리	보건복지부	· 보험약제비 상환제도 결정 ·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
리베이트 단속	검·경 등 조사기관	·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 ·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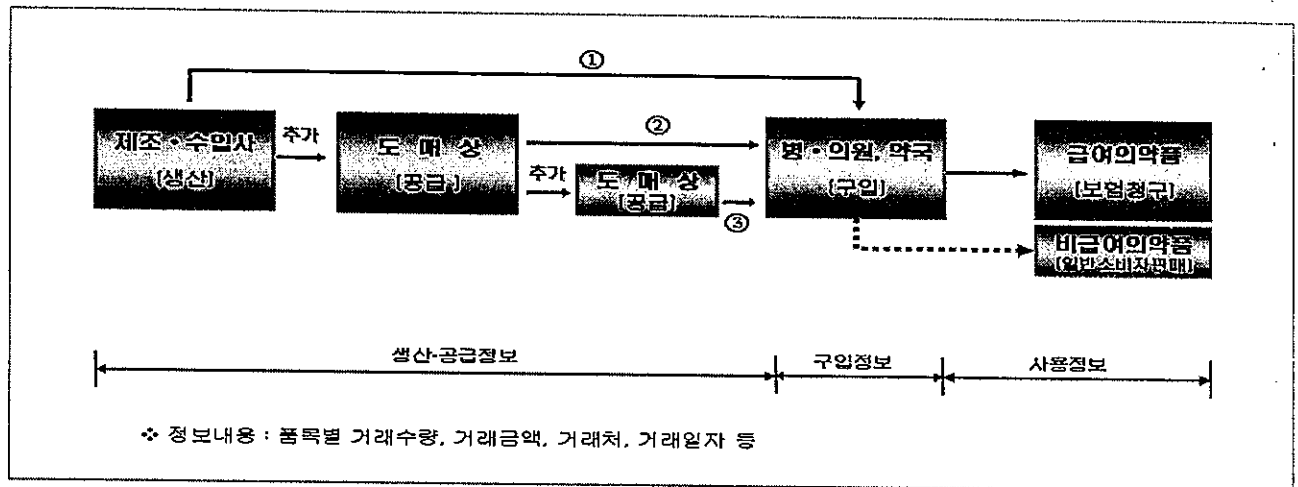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가. 의약품 유통정보관리체계 구축

3) 우리나라 복제약의 약가는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스웨덴 등 선진 16개국 중 가장 높고, 완제품 생산 국내 제약사 265개 중 2009년 기준 생산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은 35개 업체에 불과한 반면 100억 원 미만이 50% 상당인 131개 업체나 됨(2011. 8월,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는 2007년 10월 국가 의약품 통계인프라 구축과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그림 12]와 같이 의약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2] 의약품 유통정보 흐름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위 정보센터에서는 제약사 등 공급자와 병·의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나 리베이트 적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의약품 실거래가 관리

보건복지부에서는 [표 63]과 같이 1999. 11. 15. 국민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하여 보험약제비 상환제도를 종전의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매가로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개편하고 매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보험약가를 인하하여 왔으며 2010. 10. 1. 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구매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한금액과 실구매가의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개편하였다.

[표 63] 건강보험 약제비 상환제도 변천 현황

상환제도	시행일자	제도 내용 및 실시 현황
고시가 상환제도	1977. 7. 1.	- 요양기관의 실구매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으로 상환 -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실구매가의 차이를 구매이윤으로 보장
실거래가 상환제도	1999. 11. 15.	- 요양급여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매가로 상환 - 요양기관 실구매가의 제품별 가중평균가격으로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상한금액 인하 '00~'11년까지 35차례 실거래가조사를 실시, 20,266개 품목에 대해 평균 3.54% 약가 인하로 연간 4,095억 원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나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이윤을 배제하여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2010. 10. 1.	- 요양급여 상한금액과 실구매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지급 1년 단위로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품목별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 인하 - 시행 1년간 66,680개 요양기관 중 10%인 6,584개 기관이 1,006억 원의 인센티브 청구 '12. 4. 1.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충격 완화 차원에서 '12. 2. 1.부터 1년간 시행 유예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2.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가.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 원인, 유형 및 폐해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 개발에서 인허가 및 제조·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의료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특히 [표 64]와 같이 허가 및 보험급여 의약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 의약품⁴⁾의 경우는 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환자나 보험공단에 있지 않고 처방의사에게 있으며 일반의약품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⁵⁾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약품 선택에 대해서 대부분 의사나 약사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4] 의약품 허가품목 및 보험급여 현황

- 4)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
- 5)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합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허가 품목 수	38,995	21,876	17,119
보험급여 품목 수	13,605	12,257	1,348
보험급여 청구액	127,381 ^{주)}	120,271	7,110

주: 보험급여 청구액은 2011년 말 현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청구금액이므로 2011년 보험급여 의약품 전체 청구금액(134,290억 원)과 차이가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러나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처방·조제·판매하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과 그 종사자(의사, 약사 등)의 경우 1999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하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약제에 대한 저가구매 유인이 없어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으며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 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쉽게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경우 신약개발이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약 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수입이나 복제약 제조에 주력⁶⁾하게 되고 가격 또는 품질 경쟁보다는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요양기관과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촉경쟁에 집중할 유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다른 공급자인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도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요양기관과 그 종사자인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유형은 [표 65]와 같으며 이외에도 외형상 제약사 등 공급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통한 간접지원 등 리베이트 수법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과 입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6)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국산 신약 허가는 15개 품목에 불과함(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1. 1. 현재 보험급여 의약품 13,605개 중 신약은 3,844개, 복제약은 9,761개 품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65] 의약품 리베이트의 주요 유형

구분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
랜딩비	▪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납품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사례 지급
매칭비	▪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방액에 비례하여 금품 등 지급
할증 및 할인	▪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할증(덤)을 제공하거나 판매금액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탈세 등 부당이득 제공
기타	▪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자문계약 체결 후 정기적으로 고문료, 자문료 선지급 ▪ 세미나, 학회 등 지원 명목으로 관광여행 경비, 사적 모임 행사경비 등 지급 ▪ 의약품 부작용 등 조사(시판후조사) 명목으로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에게 처방사례비 지급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약제비관리정책편람」 등

따라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가 누려야 할 의약품의 가격할인 혜택이 부당하게 요양기관 등에 돌아감으로써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제약사도 신약 등의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할 가용자원을 리베이트로 낭비하게 됨으로써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해지게 된다.

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의약품 유통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약제비 상환제도를 실거래가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 66]과 같이 2010. 11. 28.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사 등 수수자까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 리베이트 단속과 처분에 관련된 기관들은 이보다 앞선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⁷⁾를 갖는 등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를 갖추고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66]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 제재 기준 비교

대상	제재 종류	쌍벌제 시행 전	쌍벌제 시행('10. 11. 28.) 후
수수자	행정처분	면허자격정지 2개월	면허자격정지 2~12개월
	형사처벌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제공자	행정처분	제약사: 판매업무정지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영업정지 15일~6개월	좌동(기존 유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이와 같이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공조체계가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7) 보건복지부,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리베이트 단속 및 처분기관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서는 2011년 4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리베이트 단속 실시

문제점 1.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감시결과 요지

-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다수의 관계기관에서 부단히 단속한 결과 많은 사례를 적발하였으나 단속결과를 행정처분기관 등에 통보해 주지 않거나 적발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많다는 사유로 제재대상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다수 누락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③-1.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절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 6개 기관⁸⁾에서는 [표 67]과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41개 업체(130개 제약사, 211개 의약품 도매상)에서 1조 1,14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요양기관 또는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다.

[표 67] 기관별 리베이트 적발 현황⁹⁾

(단위: 개, 백만 원, 명)

적발 기관 ¹⁾	제공업체 현황			리베이트 제공기간	리베이트 금액	수수내역 존재				수수내역 미존재	
	계	제약 사	도매 상			수수자 명확		수수자 불분명 ²⁾			
						제공 업체	의·약사	제공 업체	요양 기관	제공 업체 ³⁾	요양 기관
계	341	130	211	'03. 1.~'11. 9.	1,141,879	282	16,474	31	6,618	28	16,311
검찰청	28	12	16	'07. 10.~'11. 9.	91,908	22	4,509	5	5	1	16,311
경찰청	21	20	1	'06. 1.~'11. 2.	2,046	20	12	1	194	-	-
식약청	5	4	1	'08. 12.~'10. 9.	6,956	5	10,369	-	-	-	-
공정위	32	32	-	'03. 1.~'10. 9.	878,584	2	1,353	24	6,419	6	-
국세청	15	5	10	'05. 7.~'09. 12.	159,574	-	-	-	-	15	-
복지부	240	57	183	'07. 10.~'11. 4.	2,811	233	231	1	-	6	-

주: 1.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리베이트 관련 추정 세액이 없는 국세청 적발 업체 등 일부는 제외
 2. 조사자료에 수수내역은 존재하나 병원, 약국명만 있고 수수자 성명이 없어 수수자가 불분명한 수수내역 건수
 3. 조사자료에 수수내역 자체가 집계되어 있으나 수수한 요양기관이나 수수자를 알 수 없는 조사업체 수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8) 보건복지부,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9) 이번 감사기간(2012. 2. 6.~4. 6.) 중 감사원에서 6개 기관의 단속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한 결과임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표 68]과 같이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다.

[표 68] 리베이트 적발 시 기관별 제재 유형

기관	검찰경찰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공의료기관
제재 유형	제공자 및 수수자 형사처벌	- 약가 인하 - 수수자 행정처분 (면허자격정지)	제약사 행정처분 -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포탈 세액 추징	수수자 문책

주: 세부 제재 유형 및 근거 규정은 [별표 23] "리베이트 관련 제재 유형 및 근거 규정" 참조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따라서 위 6개 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표 68]과 같이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조사 자료를 소관 기관에 통보해 주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도 적발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아예 통보되지 않거나 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누락된 채로 통보되는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표 69]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23,092명 중 79.9% 상당인 18,454명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 다수의 제재가 누락되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제재조치 누락 유형과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 69]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 등 조치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명)

(단위: 개, 백만 원, 명)

구분		약가인하 ^{주)} (복지부)	의사·약사 행정처분 (복지부)	업무정지 행정처분		리베이트 제공업체 형사처벌	불공정거래행 위과징금 부과 업체 (공정위)	법인세 등 포탈세액 추징 업체 (국세청)	공공의료기관 징계 대상 (수수자 수)
				제약사 (식약청)	도매상 (시도)				
업체 또는 수수자	조치대상	50	23,092	130	211	85	42	79	413
	완료	9	100	21	38	53	2	28	-
	미조치	41	18,454	69	173	32	40	45	413
	처리 중	-	4,538	40	-	-	-	6	-
기대효과 금액		26,403	-	-	-	-	4,880	5,333	-

주: 세부 명세는 [별표 24]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세부 현황" 참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가.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누락 유형

(1) 리베이트 제공의 목적이 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 8. 1.부터 제약사 등이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표 70]과 같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의 목적이 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표 70]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규정 및 조정기준

약가 인하 규정	약가 조정(인하) 기준
「약사법」 제4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및 제14조 - 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 제3항 제6호 [별표 6](2010. 11. 27.까지 적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8조 제2항 제10호 [별표 5](2010. 11. 28. 이후 적용)	(기본인하율) -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담금액 총액 비율로 조정하되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가중 처분) - 인하 후 1년 이내 적발 시 50/100 가중 인하 (2010. 11. 27.까지 적용) - 인하 후 2년 이내 적발 시 100/100 가중 인하 (2010. 11. 28. 이후 적용)

주: 약가 조정 기준에서 ① 결정금액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담금액과 관련된 해당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② 부담금액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의미

자료: 관계 규정 재구성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조사기관에서 적발한 341개 업체 중 리베이트 제공기간이 2009. 8. 1. 이후에 해당하는 50개 업체(34개 제약사, 16개 도매상)의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71]과 같이 경찰 등 2개 기관에서 적발한 ○○○○○○○○○(대표이사 ○○○) 등 9개 업체¹⁰⁾의 130개 품목에 대하여 2011. 10. 1. 평균 9%의 약가인하 조치를 하여 연간 557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나머지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조사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목록 등 약가인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통보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사 자료가 약가인하에 활용되지 못하여 연간 264억 원 상당¹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²⁾

[표 71]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 인하 현황

(단위: 개, %, 백만 원)

실시				미실시	
업체 수	의약품 수	평균 인하율	기대효과금액	업체 수	기대효과금액
9	130	9.06	55,740	41	26,403

주: 세부 명세는 [별표 24]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세부 현황” 참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 조사 또는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에 대하여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물품, 향응 등

- 10)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중복 적발된 ○○○과 리베이트 금액이 소액(200만 원)이라 약가인하 조치를 하지 않은 ◇◇◇◇◇을 감안하면 실제 약가인하 대상 업체는 7개 업체임
- 11) 해당 의약품 목록의 일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 2011년 건강보험급여 청구수량 및 금액과 약가인하를 실시한 위 9개 업체 130개 품목의 평균 인하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 최소 금액임
- 12) 이와는 별개로 검찰 등 5개 기관(보건복지부 제외)에서 적발한 86개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기간이 2010. 10. 1.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 이전에 해당하여 그 이전 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 추정금액이 연간 269억 원 상당에 이르나 대부분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조사결과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거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 이후에 통보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실제 약가인하에 직접 활용할 수 없으므로 약가인하 기대효과금액에서 제외함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해당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및 양정을 “리베이트 쌍벌제”¹³⁾ 시행 전후로 나누어 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 및 양정

구분		쌍벌제 시행 전	쌍벌제 시행('10. 11. 28.) 이후
근거 규정	의사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68조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68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약사	▪ 구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6조	▪ 「약사법」 제47조 제3항 및 제79조 제3항 제2호 ▪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 양정		▪ 면허자격정지 2개월	▪ 면허자격정지 2~12개월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조사기관에서 적발한 341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사 및 약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76]과 같이 전체 수수 혐의자 23,092명¹⁴⁾ 중 20.1% 상당인 4,638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을 뿐 나머지 18,454명(79.9%)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적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연처리 되고 있었다.

[표 73]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명)

전체 대상자	행정처분 실시			행정처분 미실시		
	소계	조치완료	조치 중	소계	보건복지부 자체조사	보건복지부 이외 기관 적발
23,092	4,638	100	4,538	18,454	213	18,241

주: 누락 및 미조치 세부 명세는 [별표 25] “보건복지부 실거래가조사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 현황” 및 [별표 26] “보건복지부 이외의 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행정처분 미조치 현황” 참조

13)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리베이트 제공자만 형사처벌하던 과거와 달리 수수자도 형사처벌하는 제도로써 이와 동시에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양정도 2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강화됨(2010. 11. 28. 시행)

14)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및 약사의 전체 인원은 검찰 등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조사 자료에 수수 혐의자의 성명 등이 나타나 있는 16,474명과 수수 혐의자의 성명 등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6,618개 요양기관의 수수 혐의자 인원을 요양기관 1개소마다 1명씩으로 추정하여 전체 인원을 23,092명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 사례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2009년 및 2010년에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실거래가조사 실시 결과 제약사 등으로부터 수금할인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기관 213개소를 적발하고도 이들 요양기관에 소속된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1개 요양기관에 1명씩 총 213명 이상으로 추정)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담당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에 통보하지 않아 전체 행정처분 누락
-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 등 5개 업체에서 의사 등 10,369명에게 69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관서의 적발사실을 알지 못하여 행정처분 미조치

(3)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제약사 등이 의약품의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 의료관계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표 74]와 같이 「약사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의 목적이 된 의약품의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표 74]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 및 기준

대상	근거 규정	행정처분 기준	처분권자
제약사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81조 제1항	▪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 1차 위반~3차 위반: 1~6개월 - 4차 위반: 품목허가 취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도매상	▪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 영업정지 - 1차~4차 위반: 각각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조사기관에서 적발한 341개 업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75]와 같이 전체 행정처분 대상 업체의 29% 상당인 99개 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완료하거나 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242개 업체(71%)는 보건복지부 등 조사기관에서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의약품 목록, 수수자 내역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조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 또는 지연되고 있었다.

[표 75]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개)

구분	행정처분 현황			
	처분 대상	조치완료	조치 중	미조치
합계	341	59	40	242
제약사	130	21	40	69
의약품 도매상	211	38	-	173

주: 세부 명세는 [별표 27]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세부 현황” 및 [별표 28]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세부 현황” 참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 등 사례 】

- 보건복지부에서 2009~2011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의약품정책과)에서 적발한 24개 업체(4개 제약사, 20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처분기관에서 모두 행정처분을 한 반면, 2009~2010년 실시한 실거래가조사(보험약제과)에서 적발한 216개 업체(53개 제약사, 163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 누락
-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적발한 ○○○○ 등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되었고, 2009~2011년 적발한 22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서만 송부하여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음

(4) 리베이트 제공 업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3)항”과 같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94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양형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 강화되었는데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과 그 양형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로 나누어 보면 [표 76]과 같다.

[표 76] 리베이트 제공 업체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정 및 양형

구분	쌍벌제 시행 전	쌍벌제 시행('10. 11. 28.) 이후
근거 규정	▪ 구 「약사법」 제47조, 제95조 제1항 8호 및 제97조 ▪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5호	▪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제94조의2
양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업체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대표이사 ○○○) 등 10개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5,23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¹⁵⁾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등 [별표 29]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적발 명세”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 주식회사 등 32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8,78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507억 원 상당의

15)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법」, 「약사법」 등 의·약 관계 법령 이외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 고객 유인행위)에도 해당됨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위 □□□□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1년 12월 현재까지 리베이트 제공 32개 업체 중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 등 5개 업체를 제외한 □□□□□□□□□□(대표이사 □□□) 등 나머지 27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적발내역을 통보하였다는 사유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지 않았으며 위 관서로부터 32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위 관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위 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지 않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¹⁶⁾

(5)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서는 “(4)항”과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 등 32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8,78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507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6) 보건복지부의 경우 적발된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대부분 소액(1,000만 원 미만)으로 수사의 실익이 적고, 국세청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항의 형사처벌이 누락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서 제외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개최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¹⁷⁾에 참석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리베이트 적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적발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하여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자료를 수집·활용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검찰 등 4개 기관에서 적발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42개 업체¹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77]과 같이 2011년 12월 현재까지 ○●○○○○○○○○○○(대표이사 ○○○)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5억 4,1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¹⁹⁾하였으나 나머지 40개 업체(95%)에 대해서는 2011. 12월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표 77] 다른 기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대상 업체	조사 실시			조사 미실시		
	업체	리베이트 제공금액	과징금 부과액	업체	리베이트 제공금액	과징금 추정액
42	2	2,119	541	40	127,373	4,880

주: 세부 명세는 [별표 30] “다른 기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세부 현황” 참조(과징금 추정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적발한 32개 업체의 리베이트 금액 대비 평균 과징금 부과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7) 보건복지부,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

18)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전체 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적발한 32개 업체 및 리베이트 금액이 소액(1,000만 원 미만)인 업체 등 267개 업체를 제외한 수치임

19) ① 2010. 1. 22.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한 ○●○○○○○○○○(주)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 2011. 7. 22. 과징금 3억 9,500만 원 부과

②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적발한 ■■■■■■■■■■(주)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0. 11. 1. 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2012. 4. 24.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

(6) 리베이트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법인세 등 추징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가 포탈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31] “국세청에서 자체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법인세 등 추징 현황”과 같이 2010. 5월부터 2011. 1월까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15개 업체가 의사 등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법인세 등 409억 원 상당을 추징하였다.

또한 위 관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 차례에 걸쳐 개최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하여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세액을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07년 10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검찰 등 5개 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법인세 등 추징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0. 5. 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서 81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기소하면서 위 관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위 업체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1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표 78]과 같이 총 34개 업체(24개 제약사, 10개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

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포탈한 법인세 등 861억 원 상당을 추징한 반면, 2009.

10. 30.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한 △△△△주식회사(대표이사 △△△) 등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표 78] 다른 기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대상 업체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미실시		
	업체	리베이트 금액	법인세 등 추정액	업체	리베이트 금액	법인세 등 추정 금액
79	34	921,471	86,105	45	58,997	5,333

주: 세부 명세는 [별표 32] “다른 기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법인세 등 추징 현황” 및 [별표 33] “다른 기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미실시 현황” 참조(법인세 등 추정 금액은 국세청에서 자체 적발한 15개 업체의 리베이트 금액 대비 법인세 등의 평균 추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7) 리베이트 수수 공공의료기관 임직원 징계처분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143개 공공의료기관²⁰⁾과 그 감독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 등의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리베이트 단속과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의료자원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제20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²¹⁾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

20)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병·의원, 약국 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되나 본 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상대적 개념의 용어로 사용함.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국립대학병원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무원과 함께 ‘공직자’로 정의됨

21) 공직유관단체는 표준안에 따라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을 각각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준안과 거의 동일,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조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관별로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면 공공의료기관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조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 조사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소속 임직원이 제약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2. 2. 6.~4. 6.) 중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수수자 중 공공의료기관 소속 임직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79]와 같이 전체 리베이트 수수자 23,092명 중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소속 의사 9명 등 143개 공공의료기관 임직원 413명 이상²²⁾이 계 48억 6,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자 적발 현황¹⁾

(단위: 명, 개, 백만 원)

전체 수수자(민간+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합계	신원 확실	신원 미상	의료기관	수수자 ²⁾	수수 금액		
					소계	신원 확실	신원 미상
23,092	16,474	6,618	143	413	4,865	1,554	3,311

주: 1.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제공 내역에 수수자 성명 등이 나타나 있는 인원임

2. 세부 명세는 [별표 34]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자 적발 세부 현황” 참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2)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내역에 수수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인원이 413명(수수 금액: 155억 원 상당)이나 신원 미상자에게 제공한 리베이트가 33.1억 원 상당이므로 리베이트 수수 인원을 ‘413명 이상’으로 추정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리베이트 적발기관이나 이들 적발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 모두 해당 공공의료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의 수수 내역 등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리베이트 수수 공공의료기관 임직원들의 소속 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서는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누락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 6월 한울바이오파마㈜에서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59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209명 등에게 887억 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같은 해 12. 13.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공공의료기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의 경우 내과 과장 이방훈 등 의사 8명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위 업체로부터 의학논문 번역료 명목으로 4,553만 원을 수수
 - * 위 사람들은 논문 요약부분(Abtract, A4 1장 이내)을 형식적으로 번역해 주고 건당 평균 107만 원 수수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등 국내 번역시장에서 형성되는 통상의 영한번역료(1장 기준)는 25,000~45,000원 수준임)
 - ※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의 이방훈은 (취건일제약으로부터도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검찰에 적발되었고, 전체 9명 중 위 8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코오롱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됨)

나.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누락 발생의 원인

(1) 리베이트 단속·처분정보 통합관리체계 부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6개 기관에서 2010년 7월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리베이트 단속과 처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왔지만 전체 조사기관의 리베이트 단속 현황을 파악하여 처분기관이나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다른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전담할 리베이트 단속·처분정보 통합관리기관의 지정, 조사기관에서 처분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의 확정²³⁾ 등 실질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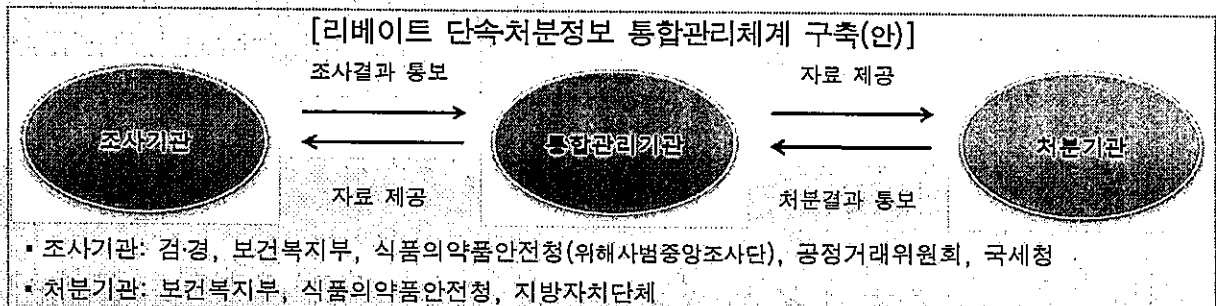
23)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7월 제1차 관계기관 대책회의 이후 14개월 상당 경과한 2011. 10. 6.에서야 검찰청 및 경찰청에 리베이트 조사결과 통보 시 의사 등 수수자의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약가 인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수수자 인적사항, 리베이트 지급방법, 조사대상 기간 등)을 파악하여 통보해 줄 것을 정식 문서로 요청함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사기관마다 조사결과 통보대상 처분기관 및 통보할 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가-(1)항”~“가-(4)항” 및 “가-(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보대상 처분기관 또는 처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리베이트 제공의 목적이 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다수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다.

【참고 사항】

- 이번 감사기간 중인 2012. 3. 16. 및 3. 27. 감사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의 리베이트 관련 실무자급 및 과장급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리베이트 단속·처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 의약품 유통관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를 리베이트 단속·처분정보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처분기관 등 필요 기관에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조사 및 처분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참석 기관 모두가 동의



(2) 리베이트 조사자료 공유를 위한 관련 법령 미비

국세청에서는 “가-(6)항”에서와 같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법인세 등 409억 원 상당을 추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과세정보 요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약사법」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조사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필요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의약품 유통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법」 등 리베이트 단속 관련 법률에 국세청의 리베이트 조사자료 등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15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세청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조사자료 또한 리베이트 관련 조사 또는 처분기관에서 소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²⁴⁾

(3) 자체 리베이트 조사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4)항”에서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2개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8,78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507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상 최초 조사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량의 유용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나 후발 조사나 처분을 위한 추가 조사 시에는 해당 업체의 증거 인멸 등의 사유로 최초 조사 시보다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후발 조사기관이나 처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판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비밀엄수 의무만 부과한 것에 불과한 공정거래법 제62조²⁵⁾의 규정을 이유로 [별표 35] “제공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와 추가 제공이 필요한 세부 조사자료 비교사례”와 같이 32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관련 내부 계획 및 집행문서, 회계증빙자료, 제공자(영업사원 등) 진술서, 수수자 명단 등 리베이트 제공자

24) 국세청에서는 「약사법」 제81조,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마찬가지로 비밀엄수의 범위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비밀엄수 의무만을 부과한 것에 불과함(2003. 8. 19.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790)

뿐만 아니라 수수자의 관련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조사자료는 제외한 채 대외에 발표하는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서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²⁶⁾

그 결과 2011년 12월 현재 위 관서에서 적발한 32개 제약사에 대하여 [별표 36]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제약사에 대한 다른 기관의 조치 현황”과 같이 국세청에서 □□□ 등 23개 업체에 대하여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에서 포탈한 법인세 등 740억 원 상당만 추징하였을 뿐 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리베이트 제공의 목적이 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보건복지부), 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누락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는 ① 의결서에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기간,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 및 입증 증거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② 공정거래법 제62조의 규정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구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공 대상 조사자료의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지 공정거래법 제62조가 일반적인 비밀엄수 의무규정이라 하여 관계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자료의 제공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별표 35]와 같이 위 관서가 관계기관에 제공한 의결서에는 제공자(영업사원 등)의 진술서, 리베이트 제공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리베이트 제공 회계자료 등 후발 조사기관이나 처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② 정보공개법과 이에 따라 제정된 위 관서의 「행정정보공개지침」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인 등 사업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26) □□□□의 골프 접대자 명단 등이 의결서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수수자 익명 처리 여부는 의결서마다 각각 다름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리베이트 제공 자료와 같이 공정거래법 또는 「약사법」 등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의 자료는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엄정한 법집행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4) 타 기관 조사결과 등을 자체 조사에 미활용

“가-(5)항” 및 “가-(6)항”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검찰 등 다른 조사기관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에서 포탈한 법인세 등을 추징한 반면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다른 기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하여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 ①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및 처분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리베이트 단속·처분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② “가-(1)항” 및 “가-(2)항”과 관련하여 검찰 등 조사기관으로부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 인하,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조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③ “가-(3)항”과 관련하여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적발된 53개 제약사와 163개 의약품 도매상²⁷⁾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④ “가-(4)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하여 「약사법」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 관서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⑤ “나-(2)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리베이트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제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리베이트 단속 및 처분 관련 법령에 해당 조사자료 요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⑥ “가-(7)항”과 관련하여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등 6개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거나 해당 기관에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 확인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① “가-(1)항” 및 “가-(2)항”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적발한 4개 제약사와 1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약가인하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가-(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리베이트 제공 업체 적발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 또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

27) 업무정지 행정처분 미조치 69개 제약사와 173개 도매상 중 16개 제약사와 10개 도매상은 국세청 등에서 법령상 제한 등의 사유로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로서 약사법령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별도로 통보하므로 이건 조사결과 통보대상에서는 제외

분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① “나-(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리베이트 조사 및 처분기관에서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해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의결서 뿐만 아니라 수수자 명단, 수수내역 등 구체적인 세부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가-(5)항”과 관련하여 검찰 등 다른 조사기관에서 적발한 42개 리베이트 제공 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40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세청장은 “가-(6)항”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다른 조사기관에서 적발한 79개 리베이트 제공 업체 중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45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특별시 등 29개 공공의료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²⁸⁾은 리베이트 수수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 조사 등을 통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23]

리베이트 관련 제재 유형 및 근거 규정

28)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대학교병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 경상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한적십자사총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소관 기관	처분 유형		근거 규정
국세청	국세 추정 형사처벌		▪ 「법인세법」 제66조 등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8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9호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10호
	의사, 약사 등 행정처분		▪ 「의료법」 제66조 ▪ 「약사법」 제79조 제3항
	의사, 약사 등 형사처벌		▪ 「의료법」 제88조의2 ▪ 「약사법」 제94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징금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형사처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1조
식품의약품 안전청	제약사 제재	행정처분	▪ 「약사법」 제76조 제1항 ▪ 「약사법」 제81조
		형사처벌	▪ 「약사법」 제94조의2
지방자치단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 「약사법」 제76조 제1항 ▪ 「약사법」 제81조
		형사처벌	▪ 「약사법」 제94조의2
수사기관	형사처벌		▪ 「의료법」 제88조의2 ▪ 「약사법」 제94조의2 ▪ 「형법」 제129조, 제133조, 제357조
공공의료 기관	수수자 문책		▪ 기관별 임직원(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정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6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		2009.7.14.	현금	12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6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민		2010.3.30.	현금	1,147,20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	
6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		2010.1.28.	현금	4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6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		2010.3.30.	현금	2,901,00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	
6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		2010.7.29.	현금	1,6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67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오		2010.3.31.	현금	956,00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	
6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오		2010.3.31.	현금	1,147,20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	
6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		2009.6.18.	현금	5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7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		2010.1.14.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7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장		2008.1.23.	현금	2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연도	공공기관	수수자	주요등기 번호	리베이트 수수기간	수수 유형	수수금액	제공업체	적발기관	적발 연도	수수지 기간연도
7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장		2010.3.26.	현금	956,000		서울중앙 지방법검찰청	2011	
7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장		2010.3.26.	현금	967,000		서울중앙 지방법검찰청	2011	
7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4.10.	건본품	5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07	
7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5.6.	의료관계 대환 의료기등 자원내역	2,236		공정거래 위원회	2009	
7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1.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77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2.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7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3.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7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4.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5.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6.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7.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8.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9.	현금	1,0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10.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11.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7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8.12.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9.1.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8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9.2.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9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9.3.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9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9.4.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9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9.5.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9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원미상		2009.6.	현금	800,000		공정거래 위원회	2011	

주: 1. 수수자 인원 합계는 수수자 성명 등 신원이 확인된 인원수만 집계하였음

2. 리베이트 수수기간은 시기와 종기가 있는 건은 시기부터 종기까지 기간 기재. 특정시기만 명시된 경우는 해당 연 월(일) 기재

3. 적발연도는 적발기간의 조사 종료 연도 기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